<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26.02.12)

다올코스닥벤처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C6419)

투자 위험 등급 1 등급(매우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다올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1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및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 등의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여 **주식 등 가격변동위험, 비유동자산 투자에 따른 거래제한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다올코스닥벤처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 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 투자전략** **(1) 이 투자신탁은 벤처기업 및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등이 발행한 주식 등에 투자신탁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하고, 그 밖에 신규 IPO 및 유상 증자 관련 주식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 벤처기업 관련 신주 투자전략** **① 공모주(IPO) 투자전략:** · 철저한 상향식 분석기법(Bottom Up Approach)을 통한 투자종목 선정 · 공모 부진에 의한 청약 미달 예상 건에 대해서는 보수적 수요예측 참여 및 가격 결정으로 리스크 관리 · 중장기 투자매력을 보유한 공모주에 대해 과감한 확약기간 설정으로 수익률 기여 극대화 추구 · 철저한 분석에 의한 기간 확약 전략으로 동종 유형 그룹 대비 수익률 차별화 추구 **② 비상장주식 및 주식관련사채(CB, BW) 투자전략:** · 우량 벤처기업 발굴 ✓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탄탄한 현금 창출력, 우수한 기술력, 산업 내 독점적 지위, 높은 자산가치를 갖고 있는 기업 선별 투자 ✓ 코넥스 상장 기업의 경우 2년 이내에 코스닥 이전상장 가능성이 높은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비상장 기업의 경우 2~3년 이내에 코스닥 상장 가능성이 높고, 투자 후 6개월 이내에 코넥스 시장에 상장하는 조건을 수용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이해하기 쉬운 사업구조를 갖춘 종목 투자 ✓ 기술적인 이해가 어렵고, 산업구조의 변동 예측이 힘든 종목은 편입대상에서 제외 · 까다로운 질적 심사 추구를 통해 투자조건 미달시 편입대상에서 제외 **③ 코스닥, 코넥스, 비상장 신주 투자전략:** · 코스닥, 코넥스 상장회사 및 비상장회사의 비상장(상환)전환우선주(보통주 포함)

✓ 일정 기간 이후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우선주로 전환권 행사 후 장내 매매
✓ 상환전환우선주의 경우 상환권이 추가된 전환우선주로서 발행사에게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옵션 추가
✓ 전환가액의 가격재조정(Refixing)요건을 추가하여 주가 하락에 일정 부분 방어 가능
✓ 비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코넥스 시장에 상장하는 조건을 수용하는 회사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코스닥 상장기업 투자전략

① 상향식 분석기법(Bottom Up Approach)에 기초한 성장주 및 가치주에 대한 선별적 투자

성장주	가치주
· 성장/회복 사이클에서 역동적인 힘을 보유한 작지만 강한 기업에 집중 투자 ✓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등 수익성 지표가 성장하는 기업 ✓ 차별적 기업 또는 시장점유율 보유기업 ✓ 정부정책 수혜 기업 등	· 역발상을 통해 시장에서 소외된 기업에 투자 ✓ 비교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기업(상대적 PER/PBR) ✓ 이익 창출력 대비 절대적 저평가 기업(저 ROE/ PBR) 등 ✓ 업황개선세가 기대되는 낮은 가동률 기업

■ 자산배분전략

① 시장상황에 따라 주식 편입비중을 전체 자산의 50%~100% 수준으로 투자하는 적극적인 포트폴리오 자산배분 전략 실행

② 일부 주가지수 선물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을 활용하여 단기적인 주식시장 변동 리스크를 축소

*** 비교지수: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신탁은 벤처기업 및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등이 발행한 주식 등에 투자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자산배분전략을 수행함에 따라 이러한 운용전략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지수가 존재하지 않아 비교지수는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혼합주식형), 개방형(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연)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단위: 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 보수	동종 유형 총보수	총 보수·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1.0% 이내	1.145%	0.50%	1.07%	1.15%	217	338	462	720	1,47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없음	1.545%	0.90%	1.39%	1.55%	159	322	489	837	1,856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의 0.5% 이내	0.895%	0.25%	0.92%	0.90%	142	237	334	536	1,127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없음	1.095%	0.45%	1.04%	1.10%	113	228	347	594	1,317

(주1)'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7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7개월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종류	최초	최근1년	최근2년	최근3년	최근5년	설정일이후

수익률, %)

	설정일	2024/04/09~ 2025/04/08	2023/04/09~ 2025/04/08	2022/04/09~ 2025/04/08	2020/04/09~ 2025/04/08	2018/04/09~ 2025/04/0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2018-04-09	-20.02	-8.06	-9.23	5.02	0.43
비교지수	2018-04-09	-	-	-	-	-
수익률 변동성	2018-04-09	23.49	21.25	20.79	21.55	21.15

(주1)비교지수 없음
(주2)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4)설정일 이후 수익률의 경우 각 종류별로 설정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의 편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준일에 미설정 또 전부해지된 종류의 수익률은 표기되지 않으며, 전부 해지 후 재설정된 종류의 경우에는 재설정 이후의 수익률이 표기됩니다.
(주5)기재가 생략된 종류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용전문인력 (2026.01. 31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혼합주식형)				운용 경력 년수
					운용역		운용사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이상재	1995년	책임 (대리)	17개	684억	68.82	29.12	71.76	30.72	2년 4개월
이진우	1999년	부책임 (사원)	-	-	-	-	71.76	30.72	-

(주1)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이 투자신탁 투자일(각 수익증권 매수일 기준)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오니 투자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투자신탁은 적격기관투자자(QIB) 시장에 등록된 채권에 한하여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채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개별 기업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식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하여 개별 주식 가격의 등락을 초래할 가능성과 개별 기업의 수익성 및 성장성의 변화에 따라 주식의 가격이 변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및 공모주 우선배정에 관한 위험	이 투자신탁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투자요건을 갖춘 자산에 투자할 예정이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투자요건을 미 충족시에는 소득공제 및 공모주 청약시 우선배정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새로이 기업공개가 되는 주식(이하 “공모주”라 함)은 과거 거래 전례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주식보다 더 큰 가격변동성을 수반할 수 있으며, 한정된 물량하에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으로 유리한 가격에 그리고 충분한 물량을 취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공모주는 보다 유리한 가격과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매도금지 규정(Lock-up)에 종속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투자자는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주식 위험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종목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보다 기업의 투명성, 신용상태 및 재무구조 측면에서 보다 열위한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보다 주식의 가격변동성이 높고 유동성도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의 성과는 일반 주식형대비 높은 변동성을 보이거나 급격한 가치하락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벤처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자산의 일정수준을 코넥스 상장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코넥스 상장주식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비교해서 변동성은 높은 반면 유동성은 낮을 수 있어 이에 따른 투자 위험이 클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비상장 주식(신주)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코넥스 상장회사에서 발행한 비상장 종류주식(전환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 등을 포함), 비상장회사에서 발행한 보통주 또는 종류주식 등은 비상장 주식으로서 공정가격을 판단하기 힘들어 취득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고, 유동성이 부족하여 환매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거래제한 위험	이 투자신탁은 벤처기업 및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벤처기업 해제후 7년 이내)등이 발행한 주식 등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이 수익증권의 추가매수가 가능한 추가형, 환매가 자유로운 개방형임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신탁에서 추구하는 전략상 유동성이 부족한 비상장 주식, 코넥스 주식 등에 투자함에 따라 상기 자산들은 거래가 불가능하거나 유동성 부족으로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상황 및 운용상황 등의 요인으로 투자신탁 설정이후 수익증권을 추가매수 할 수 없거나, 환매를 신청하여도 집합투자업자가 환매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적격기관투자자 시장 등록채권 위험	이 투자신탁은 적격기관투자자(QIB: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s) 시장에 등록된 채권에 한하여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채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적격기관투자자 시장에 등록되어 거래되는 채권은 투자대상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위험관리 능력이 있는 적격기관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일반 공모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낮고 투자위험이 높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변경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올코리아AI테크중소형증권모투자신탁[주식]”(이하 ‘대표펀드’)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되므로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자신탁 (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중 처리방안을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되므로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의 절차에 따라 대표펀드로 변경되거나 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투자요건을 갖춘 자산에 투자하지 못하거나 투자요건을 미충족할 경우에는 소득공제 및 공모주 청약시 우선배정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입방법	**· 15시30분 이전:2영업일 기준가 매입** **· 15시30분 경과후:3영업일기준가 매입**	환매 방법	**· 15시30분 이전: 2영업일 기준가 4영업일 지급** **· 15시30분 경과후: 3영업일기준가 4영업일 지급**
환매수수료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daolfund.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 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 및 종류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과세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구분	세부 내용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
계약기간	3년 이상
세제혜택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투자(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수일 기준)한 금액(해당 투자자가 투자한 모든 벤처기업투자신탁의 합계액을 말함)에 대해 투자금액의 10%를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거주자 1인당소득 공제한도는 300만원)
소득 공제 방법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소득공제신청서에 이 투자신탁을 가입한 판매회사로부터 '출자 또는 투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소득세법」 제7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퇴직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 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 그 외의 투자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공제를 신청하여야 함
감면세액 추징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투자자가 각 수익증권 투자일(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수일 기준)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투자자가 그 수익증권 투자로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지방소득세 포함)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 의무자로부터 추징 받음. 다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1. 투자자 본인의 사망 2.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3.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업자가 해산하는

	경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변경 및 지방세법 등의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다올자산운용주식회사 (대표번호: 02-788-8400/ 인터넷홈페이지: www.daolfund.com)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효력발생일	2026년 2월 24일	존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daolfund.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 년 7 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 년 7 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후취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 년 7 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 년 7 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 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 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 (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무권유 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F)	법령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 기관투자자 및 기금,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 투자자 등이 가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W)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하거나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가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daolfund.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daolfund.com)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daolfund.com)